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2025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2. 10.(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용탁

목 차

1. 검토과정	1
2. 제안사유	1
3. 예산안 개요	1
1) 회계별 예산규모	1
2) 세출총괄	2
4. 검토의견	3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34호
- 제출일: 2025년 11월 7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예산 개요

1)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추 경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 감 륜 (%)
총 계	466,366,159	447,067,932	19,298,227	4.32
일 반 회 계	464,471,478	445,181,677	19,289,801	4.33
특 별 회 계	1,894,681	1,886,255	8,426	0.4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9,327	119,327	0	0.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775,354	1,766,928	8,426	0.48

2) 세출예산 총괄(조직별)

(단위: 천원)

구분	조직별	추경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	
총 계		466,366,159	447,067,932	19,298,227	4.32	
일반회계	계	464,471,478	445,181,677	19,289,801	4.33	
	경제환경국	173,293,073	156,342,781	16,950,292	10.84	
	경제산업과	90,610,243	67,651,402	22,958,841	33.94	
	교통행정과	9,960,748	9,960,748	0	0.00	
	교통지도과	16,919,624	16,924,624	△5,000	△0.03	
	환경과	4,528,157	4,749,645	△221,488	△4.66	
	청소자원과	27,143,631	31,513,409	△4,369,778	△13.87	
	농업정책과	24,130,670	25,542,953	△1,412,283	△5.53	
	건설도시국	163,467,895	165,643,447	△2,175,552	△1.31	
	건설과	99,637,366	101,040,424	△1,403,058	△1.39	
	안전총괄과	4,643,956	4,604,871	39,085	0.85	
	도시정책과	16,853,137	16,871,077	△17,940	△0.11	
	도시정비과	21,708,382	22,436,382	△728,000	△3.24	
	건축과	1,560,096	1,560,096	0	0.00	
	하수하천과	17,337,480	17,304,250	33,230	0.19	
	토지정보과	1,727,478	1,826,347	△98,869	△5.41	
	문화관광국	87,970,694	79,889,030	8,081,664	10.12	
	문화예술과	24,325,918	23,039,431	1,286,487	5.58	
	체육진흥과	16,009,055	16,453,223	△444,168	△2.70	
	관광과	13,144,526	13,451,856	△307,330	△2.28	
	산림과	34,491,195	26,944,520	7,546,675	28.01	
	보건소	31,667,822	31,310,048	357,774	1.14	
	보건과	15,234,317	15,325,008	△90,691	△0.59	
	건강증진과	16,433,505	15,985,040	448,465	2.81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	8,071,994	11,996,371	△3,924,377	△32.71	
	특별회계	계	1,894,681	1,886,255	8,426	0.45
		경제환경국	1,873,181	1,864,755	8,426	0.45
경제산업과		97,827	97,827	0	0.00	
청소자원과		1,775,354	1,766,928	8,426	0.48	
건설도시국		21,500	21,500	0	0.00	
하수하천과		21,500	21,500	0	0.00	

3. 검토의견

-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59억 9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96억 97백만 원보다 562억 99백만 원 (증감률 4.69%)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63억 6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470억 67백만 원보다 192억 98백만 원(증감률 4.32%)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특히, 분야별 변동율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4.62% 증가, 보건 분야 1.43% 증가, 국토·지역개발 분야 0.41% 감소, 교통·물류분야 1.13% 감소, 환경 분야 13.10% 감소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증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시비 보조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514억 57백만원에서 746억 72백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로 판단되며 기타 분야에서는 결산추경인 만큼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불가능한 사업비를 감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 보고는 세출분야 예산안 중 크게 증감 편성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 증감 사업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액	기정액	증감
경제산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74,672,100	51,457,345	23,214,755
	2025년 달성 안심일터 채용연계 지원사업	53,340	0	53,340
청소자원과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대행 수수료	7,220,000	8,970,000	△1,750,000
	재활용선별장운영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3,315,330	4,290,000	△974,670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7,490,000	8,479,000	△989,000
건설과	논공 삼리리 457-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630,000	500,000	130,000
	가창 삼산리(삼성요양병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	0	300,000
	유가 초곡리 189-2번지선 도로확장	100,000	0	100,000
	현풍 대2리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	310,000	200,000	110,000
	비슬산 휴양림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	200,000	0	200,000
하수하천과	가창 우록리 1512번지선 우록소하천 정비공사	500,000	0	500,000
문화예술과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설계	1,500,000	0	1,500,000
산림과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7,000,000	0	7,000,000
	2024년 숲가꾸기(기금)(미세먼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5,103	0	85,103
	2024년 사방사업(자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1,775	0	81,775
	2024년 임도시설 보수 등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26,886	0	126,886
	2024년 숲가꾸기(기금)(미세먼지)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7,222	0	67,222
건강증진과	첫만남 이용권	3,607,000	3,160,000	447,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628,200	1,400,000	228,200
농촌지도과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	54,120	4,000,000	△3,945,880

<경제산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232억 14백만 원 증액은 국·시비 보조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514억 57백만원에서 746억 72백만 원으로 232억 1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183억 69백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것으로 정부의 지급 일정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청소자원과>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대행 수수료 17억 50백만 원 감액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매립장, 소각장보다 반입수수가 낮은 SRF 반입 물량 증가로 인해 최종 처리비 절감에 따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선별장운영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9억 74백만 원 감액은 본 사업비의 당초 추계 편성한 예산보다 실제 집행액이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9억 89백만 원 감액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교부결정액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사업의 재원은 전액 기금에 의해 편성됩니다.

<건설과>

논공 삼리리 457-4번지 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30백만 원 증액, 가창 삼산리(삼성요양병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증액은 보상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유가 초곡리 189-2번지 선 도로확장 1억 원 증액, 현풍 대2리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 1억 10백만 원 증액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물가상승에 따른 관급자재비 부족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비슬산 휴양림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 2억 원 증액은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균일한 제설·제빙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사업비로 집행기관에 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하수하천과>

가창 우록리 1512번지 선 우록소하천 정비공사 5억 원 증액은 특별교부세 교부(2025년 10월)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구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설계 15억 원 증액은 설계공모가 2025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 70억 원 증액은 총사업비 155억 원으로 설계공모가 2025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숲가꾸기(기금)(미세먼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85백만 원 증액은, 국비보조사업의 완료에 따라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첫만남 이용권 4억 47백만 원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28백만 원 증액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보조금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과>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 39억 45백만 원 감액은 ‘차천교차로 개선공사’에 당초의 본 사업 대상지가 일부 편입됨에 따라 현재 사업 부지 변경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사업대상지 미확정으로 당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월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예산으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행정 신뢰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이월 비중이 높아지면 예산 집행을 통한 정책 효과가 적시에 나타나기 어렵고,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전가되어 예산 규모의 왜곡과 반복적 불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전 타당성 조사 강화를 통한 집행 가능한 현실적 예산 편성, 편성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우선순위 설정과 집행을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겠으며, 이월 사유의 투명한 공개, 이월 사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년 대비 명시이월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A)	건수 (B)	이월액 (C)	이월율 (C/A)	예산액 (A)	건수 (B)	이월액 (C)	이월율 (C/A)
경제환경국	62,364	12	2,547	4.08%	175,166	11	2,860	1.63%
건설도시국	121,142	200	55,648	45.94%	163,489	266	88,473	54.12%
문화관광국	86,729	55	21,246	24.50%	87,970	48	28,462	32.35%
보건소	34,399	-	-	-	31,667	-	-	-
농업기술 센터	10,250	-	-	-	8,071	1	32	0.40%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필수 사업비 부족분과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불가능한 사업비를 감소 편성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에도 적법하게 편성·제출되었습니다.